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사례

직업성 질환 여부

○○화학공업사 운전보조직이 신체상 반점과 여드름자국 같은 반점이 발생하여 진단된 상병명
“습진성피부염”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207호 93. 3. 29. 기각)

재 결 서

사 건 명 : 요양급여(직업병)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주 ○ ○
주소 : 부산시 동구
원 처 분 청 :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김 ○ ○
주소 : 부산시 진구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화학공업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2. 11. 27.자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

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화학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2월경 신체상 반점과 여드름 자국같은 반점이 발생하여 상병명 “습진성 피부염”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피재자는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1986. 9월부터 포장반에서 폐놀과 포르말린을 10 : 8의 비율로 혼합, 중화합한 단단한 고체물질이 분쇄기에 훌러나오면 비닐포장지에 담아 포

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포름알데히드, 멜라멘 수지(액체 혹은 반고체 상태)와 같은 유해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접촉피부염이 발병한 것이며, 피재자의 증상에 대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습진성 피부염”, 부산○병원에서 “습진성피부염, 폐놀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기인”으로 직업병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과 전혀 다른 상병명 “건선”으로 진단한 것은 오진으로 이를 근거로 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전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전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2. 23. 주○○)
2. 답변서(1993. 2. 25.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3. 2. 8 변○○)
4. 최초 요양신청서 사본(1992. 9. 23 김○○)
5. 초진 소견서 사본(1992. 9. 17. 부산○병원)
6. 직업성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회신문 사본(1992. 11. 5. 한국산업안전 관리공단 산업보건연구원)
7. 의학적 소견 회신문 사본(1992. 11. 23. ○○ 대병원)
8.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2. 11. 원처분청)
9. 문답서 사본(1992. 9. 28. 김○○)
10. 문답서 사본(1992. 9. 29. 오○○)
11.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사본(1989. 9. 부산 ○병원)
12.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전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화학공업사에서 운전보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2월경 신체상 반점과 안면부 여드름 자국같은 반점이 발생하여 상병명 “습진성피부염”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자 원처분청은 동상병이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1986. 9월부터 포

장반에서 폐놀과 포르말린을 10 : 8의 비율로 혼합, 중화합한 단단한 고체물질이 분쇄기에 훌러나오면 비닐포장지에 담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포름알데히드, 멜라멘 수지(액체 혹은 반고체 상태)와 같은 유해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접촉 피부염이 발병한 것이며, 피재자의 증상에 대하여 ○○ 정형외과의원에서 “습진성피부염”, 부산○병원에서 “습진성피부염, 폐놀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기인”으로 직업병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과 전혀 다른 상병명 “건선”으로 진단한 것은 오진으로 이를 근거로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전을 면밀히 살피건대, 첫째,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의 의학적 소견인 “습진성피부염(추정), 전신부위”이고, 부산○병원의 소견 또한 “습진성피부염”으로 피재자 진술에 의한 1986년경 발병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1989. 9. 19~9. 20간 ○○대학교 부산 ○병원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공장내 포름알데히드의 기중농도 측정에서 그 농도가 허용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이나 이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1공장 혼합부서에 설치되어 있던 후드를 유해가스가 완전히 포집될 수 있도록 보완하게 되면 더욱 기중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볼밭 부서에서는 허용기준치에 미달되지만 HCHO 가스가 발생되므로 단계적인 시설보강이 요망되며, 2공장 로라부근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외부와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요망된다는 것이며,

셋째, 피재자에 대한 ○○대학교병원 피부과 환경 및 직업 피부병 크리닉 담당교수 은○○의 임상진단 및 피부조직 검사 결과 피부병변은 두피를 포함하여 체간, 사지 중 거의 전신에 중등도 이상의 건선(Psoriasis)병변이 있고, 안면에는 지주 피부염이 의심되는 경미한 습진병변이 있으며, 상박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건선의 조직 소견을 나타내므로 이에 따른 진단 및 소견으로 환자의 주 피부병변은 건선이며 이는 직업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면부위의 피부염은 지주 피부염

이 가장 가능성은 높으며, 주 피부염은 원인 불명으로 보통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단지 주 피부염과 감별하여야 할 질환에 접촉피부염이 있으며 이를 감별하기 위하여 첨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환자의 등에 건성병변이 심하게 있어 현 상태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며,

넷째,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피재자의 피부질환을 서울대학 피부과에 특진 진단의뢰 결과 건선과 주 피부염으로 진단되어 이 병명은 직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에 상병상태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같은 환경하에서 기인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목재(주) 근로자가 도장반에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명 “Isocyanate에 의한 직업성 천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486호 93. 6. 21. 취소)

재 결 서

사 건	명 : 요양급여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조 ○ ○
	주소 : 인천시 북구
원 처 분	청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안 ○ ○
	주소 : 인천시 서구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목재 주식회사

주 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3. 2. 25. 자 “안○○”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2. 2. 25. 자

피재근로자 “안○○”(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주)○○목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5. 26. 극립의료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Isocyanate에 의한 직업성 천식”에 대한 요양을 산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현재 직업성 천식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인정 규정에 의거 요양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피재자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의 “Isocyanate에 의한 직업성 천식”은 동 질

환의 발증원인과 작업 과정중에 도장용 화학물질 취급 흡입간에 발증 유해인자로서 인과관계가 있고, 국립의료원에서 동 질환에 대하여 직업성 천식 임을 의학적으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동 질환은 작업과정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증된 질환이 명백 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4. 27. 조○○)
2. 답변서(1993. 4. 30.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2. 4. 20. 박○○)
4. 요양신청서 사본(1992. 9. 25. 안○○)
5. 요양 결정결의서 사본(1993. 2. 25. 원처분청)
6. 특진소견서 사본(1993. 1. 29. ○○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
7.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3. 2. 25. 원처분청)
8. 환자 소견서 사본(1992. 10. 8. ○○의료원)
9.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주)○○목재 소속 근로자로 1988. 1. 4.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가구의 내·외면에서 신나, 경화재, 촉진제, 폴리에틸렌을 혼합 또는 계별약품의 도료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서 페인트칠을 하여 오다가 피재자 임의로 1992. 5. 26. ○○의료원에서 검진한 “Isocyanate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판명되어 1992. 8. 18. 특판1부 현장관리과로 작업부서를 전환한 후 1992. 9. 18.부터 1992. 9. 25 까지 동 의료원에서 입원요양하였는바 원처분청은 ○○의과대학병원 특진 소견 및 자문의 소견에 의거 “현재 직업성 천식”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요양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상 “피재자는 가구공장의 도장부에서 5년간 근무한 환자로 4~5개 월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어 왔으며, 이는 휴가시 좋

아셨음, 검사소견은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상 *Fusarium* sp에 양성($6 \times 5/24 \times 24$)이었으며, 총 IgE치 1595IU/ml 이었음. RAST상 ma는 class 1이었다. TDI-RAST는 1.78, MDI-RAST는 2.29, HDI-RAST는 0.73이었음. 메타클린 기관지 유발시험상 양성 반응(25.0mg/ml)이었으며, TDI-천식유발시험상 양성 반응(조기천기반응)을 나타내었음, 피재자는 1992. 9. 18.부터 25일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약물투여 및 격리후 많은 호전이 있었음. 이상의 소견으로 피재자는 Isocyanate에 의한 직업성 천식 환자로 사료되며 향후 계속적인 약물투여 및 추후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및 1993. 1월 ○○의과대학병원 특진 소견서상 “피재자의 과거력 및 입원당시의 청진소견상 작업과 관련된 천식이 의심되나 1992. 9월 이후 폭로 중단 상태로 본원에서 첫번째 입원 당시 동반된 호흡기 감염을 치료한 뒤 직업성 천식에 대한 정밀검사 당시는 호흡기 증상이나 폐기능 장해가 없었고, 작업장에서 2주간 1일 4회 최대호기유속을 측정하였으나 이상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작업장에서 가져온 폴리에틸렌, 신나촉진제, 경화제 등 4가지로 시행한 특이적 기관지 과민반응 검사상에도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직업성 천식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과거력이나 과거 타병원의 병력을 감안하면 기관지 천식 유발인자나 혹은 동일 작업장에 계속 폭로시 호흡기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는 1992. 8. 18. 작업부서 전환후 현재 직업성 천식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작업부서 전환 이전에는 도장공으로서 약 4년 8개월동안 신나, 경화제, 촉진제, 폴리에틸렌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직업성 천식이 유발되었다고 보므로 Isocyanate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된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한 보험급여를 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청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